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51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5년 0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II. 제안이유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함.
2. 이에 중앙정부 및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으므로, 202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출연 사무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 나. 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추진 필요성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지방분권·지방행정·지방재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행정 과제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현안에 대해 지역 연구원과 차별화된 조사·분석을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각 17개 시도가 출연금을 분담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에 기여함.

다. 출연 사무내용

- 1)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2) 지방행정·지방재정·지역발전의 당면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3)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및 용역 수탁
- 4)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 대한 자문 및 경영진단 등
- 5) 국내외 연구기관과 교류, 협력

라. 출연기관 개요

1) 연 혁

- ' 84. 8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설립 허가(서울시 마포구)
- ' 86. 5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 15.10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출연금 지급 지자체에 특별시 포함) 및 서울특별시 출연 시작

- ' 16.12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

2)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반곡동)

3) 위치도



4) 규 모

- 조 직: 원장, 1부원장(6실), 1센터(3부)

▶ 기획조정실, 자치분권제도실, 지방행정혁신실,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균형발전실, 경영지원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인 력 (2025. 07. 31. 기준)

▶ 임 원: 30인 이내 (당연직 22인, 임의직 8인)

이사회 구성현황

○ 원 장(1): 육동일

○ 당연직(21)

- 행안부(4):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균형발전지원국장

- 시·도 기획조정실장(17):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임의직(4): 김재훈(서울과기대), 김태영(경희대), 손희준(청주대), 이재원(부경대)

▶ 직 원: 현원 98명 (원장 1, 연구직 58, 행정직 18, 전문직 1, 투자분석직 20)

(2025. 07. 31.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원장	연구직	행정직	전문직	투자분석직
정원	104	1	63	19	1	20
현원	98	1	58	18	1	20
과부족	- 6	0	- 5	- 1	0	0

5) 시설현황

- 규모 : 지상 3층, 지하 2층 / 연면적 5,742.68m²
- 건축년도 : 2016년(' 16.12월 강원도 원주시로 이전)
- 시설현황

층별	주요 용도
지하 2층	주차장, 체력단련실, 기계실, 전기실
지하 1층	자료실
1층	로비, 경영지원실, 기획조정실 연구기획과
2층	임원실, 연구실(지방재정경제),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3층	연구실(자치분권제도, 지방행정혁신, 지역균형발전), 중회의실, 소회의실, 여성휴게실
※ LIMAC 별도 청사 임차 사용 중(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5~6층)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1) ' 26년 출연금 편성액(안) : 250백만원

2)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원
 -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원

※ 분담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동의안의 개요

- 동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에 서울시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및 출연 경위

- 지난 1984년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해짐에 따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됨.
- 이후 1986년 지방행정연구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연구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같은 해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이 제정·시행 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의무가 법정화됨.
- 현재 연구원은 연구직 58명을 포함한 98명(정원 10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지방행정·재정 및 지역발전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예비)타당성 조사·평가 연구, ▶국내외 연구 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음.
- 동 연구원의 세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17개 시·도의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을 정하고 있음.

-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 총액은 전년도와 같은 41억 5천만원으로,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2억 5천만원을, 세종특별자치시가 1억 5천만원을 출연할 예정임.

3. 출연의 적정성 여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¹⁾.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²⁾에 따르면, 연구원은 출연 의무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에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추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출연금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26년도 출연금 요구서에 따르면, 서울시의 출연금은 2억 5천만원³⁾이며, 이 중 인건비는 2억원(80%), 연구사업비는 3천 5백만원(14%), 일반운영비는 1천 5백만원(6%)을 차지함.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등) ① 연구원은 매년 10월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3)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17개) 출연금 총 4,150백만원
- 특별·광역시·도(16개) 출연금 : 각 250백만원
- 세종특별자치시(1개) 출연금 : 150백만원

※ 분담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교부절차 등)

< 2025년도 서울시 출연금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예산액	산출기초
합계		250,000	
인건비 소계 (80%)		200,000	
	인건비	200,000	• 연구원 인건비(연구직 58 분석직 18 전문·행정직19)
연구사업비 소계 (14.0%)		35,000	
연구사업비	정책연구과제	10,000	•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8,000	•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9,000	•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8,000	•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일반운영비 소계 (6%)		15,000	
일반운영비		15,000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서울시 출연의무가 법정화된 이후, 동 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서울시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매년 정책연구과제 1건과 현안이슈 리포트 1건(2018년부터 시작)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 정책연구과제와 정책이슈리포트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고('25년 연구과제 2건, 리포트 2건 접수), 주제 역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라 서울시정에 실질적인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3년간 서울시 정책연구과제 수행 현황 >

구분	연구과제명	부서
202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자원배분 및 재정확충 방안	세제과
2024	서울시 균형발전사업 사전적격성 검토 방안 연구	균형발전정책과
2025	서울특별시 해외 유학생 유치 및 정착 연계 방안 연구	외국인이민담당관

< 최근 3년간 서울시 정책이슈리포트 리포트 지원 현황 >

구분	연구과제명	부서
2023	서울특별시 표준 안전교육 커리큘럼 개발	소방재난본부
2024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어르신복지과
2025	서울 균형발전 전략 재구성 방안: 개념 및 정책 추진 방향 정립	균형발전정책과

- 한편 동 연구원에 대한 정부 간 출연금 추이를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3.8%(22억 4천 1백만원 → 32억 2천 3백만원)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기간 62.7%(25억 5천만원 → 41억 5천 만원) 증가하였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차액도 확대되는 (‘16년 3억 9백만원 → ‘25년 9억 2천 7백만원) 등 연구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재원을 부담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중앙정부	2,241	2,129	2,529	2,854	2,854	2,854	2,854	3,354	2,854	3,223
지방자치단체	2,550	3,300	3,300	3,710	3,900	4,100	4,100	4,150	4,094	4,150
자체수입 +이월금	3,479	3,362	4,107	2,615	3,485	2,147	6,677	5,848	6,248	5,716
총 수입	8,270	8,791	9,936	9,179	10,439	9,101	13,631	13,352	13,196	13,089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출연한 고유의 연구원을 설립해 해당 지역의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동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출연금으로 일방적으로 배분·부담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

담당자	연락처
김성만 전문위원	02-2180-8054